

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이지연 · 강승수 · 김민성 · 김재우 · 김정도 ·
박교상 · 신용하 · 이상호 · 장미경 · 정지원 ·
추은희 의원(11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지 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·18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바,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적용 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숭고한 애국·애족정신을 존중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대상자에 5·18 유공자 포함(안 제8조제1항제3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
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5·18민주유공자를 신설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해당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, 국가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실질적인 보훈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